# 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산	960727-*****		

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ОГНІ	보수월액(	고지금액)	소득월액(	'납부금액)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0	0	0	0
02월	0	0	0	0
03월	0	0	0	0
04월	0	0	0	0
05월	0	0	0	0
06월	0	0	0	0
07월	0	0	0	0
08월	0	0	0	0
09월	0	0	0	0
10월	0	0	0	0
11월	73,370	7,520	0	0
12월	73,370	7,520	0	0
연말정산	0	0		_
합계	146,740	15,040	0	0
총합계				161,78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강산	960727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0	0
07월	0	0
08월	0	0
09월	0	0
10월	0	0
11월	99,000	0
12월	99,0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접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리	0	
합계	198,000	0
	198,000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・추납보험료・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산	960727-*****	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5-18-79***	당감****	일반	4,700
**5-96-10***	최안****	일반	14,800
**7-82-07***	( 사****	일반	25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44,5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44,5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산	960727-*****		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 대중교통	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0	0	394,200	0	394,200
3월분	0	0	12,200	0	12,200
4~7월분	0	0	87,500	0	87,500
그외 (1~2월,8~12월분)	0	0	294,500	0	294,5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· · - · - /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0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대중교통	0	0	0	5,200	12,700
			3,800	0	1,300	2,400	
			8,600	4,800	12,200	10,800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대중교통	2,400	30,900	43,400	48,100	381,500
			46,400	51,300	59,900	62,7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강산	960727-*****		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4,515,586	0	0	146,900	4,662,486
3월분	169,620	0	0	74,100	243,720
4~7월분	1,502,114	0	0	72,800	1,574,914
그외 (1~2월,8~12월분)	2,843,852	0	0	0	2,843,852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0	0	0	0		
직불카드 등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일반	0	0	0	0	616,490	
			245,680	18,650	246,920	105,240		
				0	0	0	0	
직불카드 등	수협은행 (521-88-00621)	일반	0	0	0	0	300,000	
			0	0	0	300,000		
			197,100	90,090	169,620	201,172		
직불카드 등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일반	120,600	561,052	619,290	468,955	3,597,096	
			104,310	81,640	423,847	559,42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10119-69216599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5-

#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	
강산	960727-*****			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
	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직불카드 등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나 도서공연등	0	0	74,100	57,200	
			0	15,600	0	0	146,900
			0	0	0	0	
직불카드 등	( 주 ) 신한은행 (202-81-02637)		0	0	0	0	
		일반	0	0	0	2,000	2,000
	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